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41

발의연월일: 2021. 12. 29.

발 의 자 : 김미애 · 황보승희 · 김승수

김상훈 • 박 진 • 윤두현

정경희 · 신원식 · 김예지

조명희 · 강대식 · 성일종

백종헌・송석준・김 웅
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'2021년 교육기본통계'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·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,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.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.

다문화학생은 신체적·문화적·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,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·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 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 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의3(다문화가족 학생의 보호) ① 누구든지 「다문화가족지원 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이 하 "다문화학생"이라 한다)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 다.
  -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그심의과정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- ③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16조의3(다문화가족 학생의 보 |
|                    | 호) ① 누구든지 「다문화가족   |
|                    |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다문화가족으로서 학교에 재학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중인 학생(이하 "다문화학생"이  |
|                    | 라 한다)에게 학교폭력을 행사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경우 그 심의과정에 「다문화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문인력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할 수 있다.</u>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③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   |
|                    | 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다문화학생인 경우 원활한 의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요한 경우 외국어 통역서비스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등을 제공할 수 있다.       |